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8. 10. .

제안자 : 권영숙 의원 외 1인

1. 개정이유

운영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알기 쉽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추가·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로 명칭 개정(안 제2조~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

다.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공보담당관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을 추가하여 소관 기관을 구체화(안 제3조)

라.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준용 조항 추가(안 제6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쉬운 말로 쓰기 및 띄어쓰기 등 용어·문장 정비

3. 예산조치 : 필요

4. 입법예고 : 필요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6.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원심사등”을 “청원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3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위원장의”를 “그”로 한다.

제13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운영·의사등에 관하여”를 “운영·의사등에”로, “회의규칙”을 “회의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u>운영위원회</u> - 7명</p> <p>2. 3.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u>청원심사등</u>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u>운영위원회</u> 가. 나. (생략)</p> <p><u><신 설></u></p> <p>다. (생략)</p> <p>2. 행정건설위원회 <u><신 설></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p> <p>-----</p> <p>-----</p> <p>-----</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p> <p>1. <u>의회운영위원회</u>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p> <p>----- <u>청원심사 등</u>-----</p> <p>-----</p> <p>② -----</p> <p>-----</p> <p>1. <u>의회운영위원회</u> 가. 나. (현행과 같음)</p> <p><u>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u></p> <p><u>라. (현행 다목과 같음)</u></p> <p>2. -----</p> <p><u>가. 공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u></p>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항

나. ~ 마.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③ -----
----- 의회운영위원회-----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의회운영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④ (생략)

제11조(부위원장)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회의 규칙 제6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위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
-----.

제13조(준용규정) -----
사항 외----- 운영·
의사 등에 -----
회의 규칙-----.

【관 계 법 령】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